

부패방지와 청렴사회 실현

반부패 개혁 국정과제의 추진현황과 과제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목 차

1. 국정과제2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 대한민국 실현'
2. 19대 대선에서 시민사회의 반부패 정책요구
3. 추진현황
4. 추진효과
5. 시사점과 과제

1. 국정과제2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 대한민국 실현'

- 2017. 7. 19. 발표된 100대 국제과제 중 두 번째 과제
- (부패방지시스템 구축) '17년 반부패 협의회 설치·운영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부패 기능과 조직을 분리, 독립적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국가청렴위원회' 신설
- (공익신고자 보호) '17년부터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18년부터 국민소송제도 도입·시행
- (중대 부패범죄 처벌 강화) '17년 5대 중대 부패범죄(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의 처벌기준 강화
-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 확립) '17년에 국민중심 반부패 청렴정책 수립을 위한 민관협약체 구성 및 국민감사 청구대상 확대
-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19년부터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및 공익법인 투명성·공정성 강화

※ 기대효과 : 국제투명성기구 평가 부패인식지수(CPI) 20위권 도약

2. 19대 대선에서 시민사회의 반부패 정책요구

촛불혁명과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으로 치루어진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반부패운동에 앞장서 온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의 5개 시민단체는 '각 당 후보에게 드리는 반부패 12대 정책과제 제안서'를 4월에 발표하고 대선 후보들에게 아래의 12개 정책과제를 전달

- 1) 차기 대통령은 출범과 동시에 부패와의 전쟁 선포 등 강력한 반부패 척결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 2)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관계기구협의회를 복원하여야 한다.
- 3) 강력한 반부패 척결을 위한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반부패 전담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4) 검찰개혁은 물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
- 5) 지속가능한 반부패 문화 확산을 위한 공공, 기업, 시민사회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복원해야 한다.
- 6) 회계검사 기능 국회이관 및 자체감찰기구 강화, 시민감사의 확대가 필요하다.

2. 19대 대선에서 시민사회의 반부패 정책요구

- 7) 청와대, 국무회의, 정부위원회 등 중요 정부기관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
- 8) 공익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공익제보자보호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 9) 청렴교육 인프라 확대 및 학교와 사회의 반부패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 10) 공정한 경쟁과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실효성 있는 기업부패 방지에 나서야 한다.
- 11) 전관비리 등 법조계의 잘못된 관행 근절을 위한 징계와 처벌조항을 강화해야 한다.
- 12)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고 청탁금지법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추진현황

1) 범국가적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과 실효성 확보

- 반부패 총괄기구 설치 노력

- 독립적인 반부패 총괄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행정심판 기능 분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조사기능 강화 등을 위한 [부패방지권익위법]을 개정 추진하기 위해 법안이 20대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미통과

-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 설치

- 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부패방지 및 공정성 향상 대책 마련 등 강도높은 반부패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운영
- 대통령(의장), 권익위(간사) 등 15개 부처 등으로 구성. '17.9월 출범 후 반기별 1회 개최

-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반부패 로드맵 수립 및 이행

-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수립('18.4) 이후 반기별 이행점검
- 갑질근절,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무원행동강령 개정('18.4, '18.12)
-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 채용비리 적발과 공정한 채용질서 정착,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국민 생활 속 부패 근절 : 생활적폐대책협의회(의장: 권익위 부위원장)을 출범하여 채용비리, 갑질, 토착비리 등 9대 과제를 선정하고 근절대책 마련 추진

3. 추진현황

2) 공익신고자 보호 확대와 예산낭비의 방지

- 공익신고자 보호 확대 및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한 국민소송제도 도입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공익신고 범위를 확대(공익신고 대상법률수 279개 → 471개, '21.4),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18.10) 등 공익신고자 보호, 보상 강화를 위한 법, 규정 개정
 - 국민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 제출 및 국회 설득 등 입법 노력 :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되고 쟁점에 대한 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미통과

3)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처벌강화와 국민권익 보호

-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 횡령, 배임, 뇌물수수, 알선수뢰, 알선수재에 대한 사건처리기준을 '18.6월 개정하여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엄정 적용
- 사면시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 경제인, 공직자나 각종 강력범죄자는 대상에서 배제
- 다중인명 피해범죄 법정형 상향 등을 통한 국민참여재판 대상확대(입법 추진 중)

3. 추진현황

4) 시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 확립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및 국민모니터단을 출범('18.3)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국민참여 활성화와 협의를 위해 민관협력체계를 구축, 사회 각계 대표급 30여명이 모여 우리 사회의 주요 반부패, 청렴 이슈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청렴사회협약 확산 지원
 - 청렴사회협약 : 정부 주도의 부패통제 장치로는 청렴수준 개선에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 각 분야가 청렴을 약속, 실천하는 '청렴사회협약' 체결 및 이행 추진
 -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민관 협업으로 수립('18.4)하고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논의를 통하여 청렴정책 제안(특수활동비 편성 및 집행관리 개선방안 등)

5) 공익법인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를 위한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 법률안 마련을 위한 TF구성 운영('18.2.~)
- 시민공익위원회를 법무부 소속 행정위원회로 설치하는 안으로 재입안('19.12.)

3. 추진현황(이해충돌방지법 제정, '21.4.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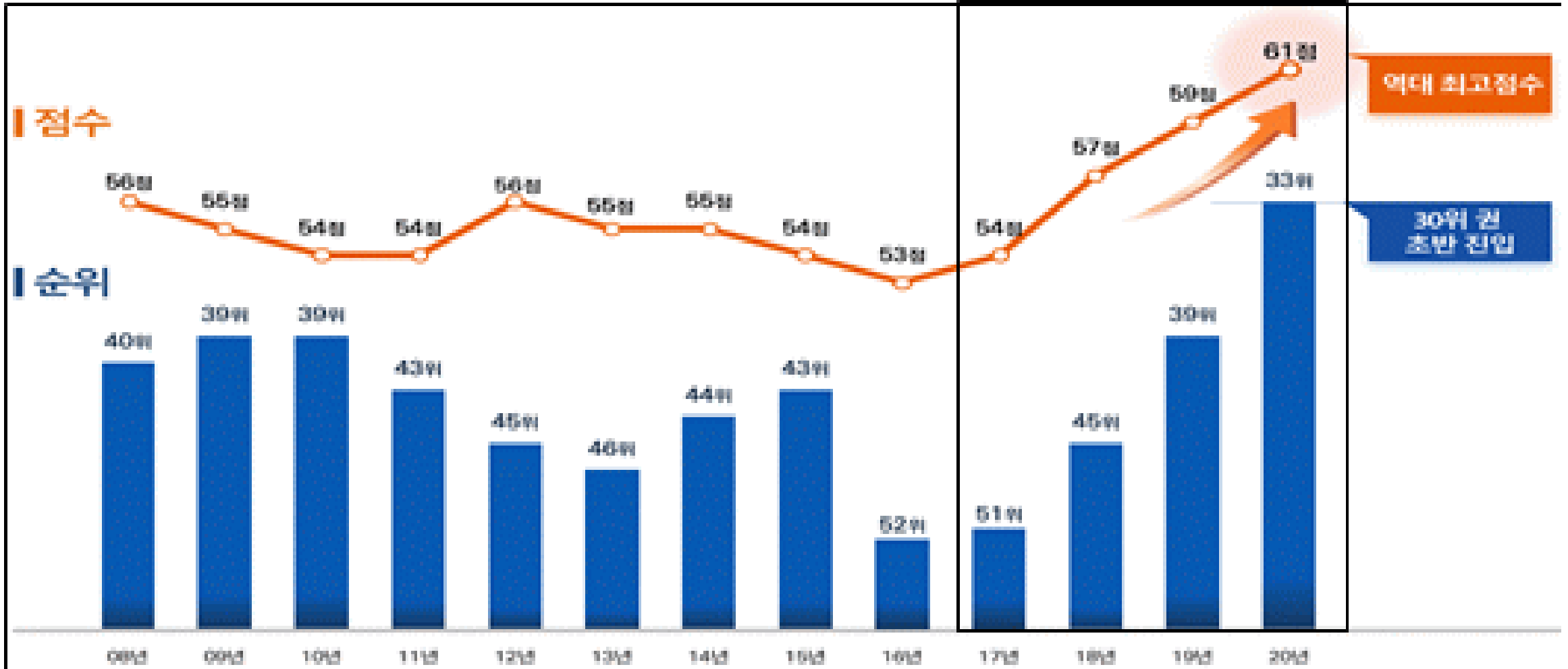


<p>목적</p>	<p>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p>		
<p>정의</p>	<p> ▶ 이해충돌 :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 사적이해관계자 : 공직자와 그 가족, 공직자 또는 그 가족이 임원(사외이사)으로 재직 중인 법인. 단체나 대리. 고문. 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 법인. 단체, 공직자가 채용(임용) 전 2년 이내에 재직한 법인. 단체, 퇴직 2년 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자 등 </p>		
<p>이해충돌 방지 및 처리</p>	<p>신고 및 제출 의무의 부여</p> <p>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p>	<p>행위의제한및금지</p> <p> ▶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가족 채용 제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사용 금지 ▶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p>	<p>공무수행사인의 의무</p> <p> ▶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 제한 </p>
<p>신고 및 업무처리 등</p>	<p>신고, 신고자 보호, 보상</p> <p> ▶ 위반행위의 신고 ▶ 위반행위신고의 처리 ▶ 신고자등의 보호, 보상 </p>	<p>위법한 행위에 대한 조치</p> <p> ▶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 부당이득의 환수 </p>	<p>제도 운영</p> <p> ▶ 교육과 홍보 등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p>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4. 추진효과

1) 국제투명성기구 발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한국의 연도별 변화 추이



4. 추진효과

2) 국제투명성기구의 '2020 아시아지역 부패바로미터' 평가결과

- '우리나라가 더 청렴해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43%로 '17년(17%) 대비 26% 상승

3) 한국행정학회의 2020년 '정부부문 부패실태 인식도 조사' 결과

-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1.8%로 '19년(18.3%) 대비 6.5% 개선

4)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

- 8.27점으로 3년 연속 상승('18년 8.12점, '19년 8.19점)
- 국민들의 부패경험률도 0.4%로 3년 연속 개선('18년 0.7%, '19년 0.5%)

5) 공익신고자 보호강화

- '19년 대비 '20년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원상회복 등 보호건수 증가(42% ↑),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처분한자 고발, 징계요구 확대(133% ↑), 보상금과 포상금 지급 확대(68% ↑)

5. 시사점과 과제

- 1) 부패척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정책의 효과, 그리고 공직사회 부패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사회적 압력이 작용하여 한국사회의 청렴도가 지난 4년간 큰 폭으로 상승함
- 2) 국민권익위원회 재편, 국민소송제도 도입, 다중인명 피해범죄 근절,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등 입법이 필요한 영역에서 진척이 느려 반부패 개혁에 대한 법제도적 뒷받침이 충분치 않았음
- 3)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정에서도 보이듯이 사회와 정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미루다가 LH사건과 같은 큰 문제가 터진 후에 부랴부랴 입법에 나서는 경우가 많음. 정치권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임
- 4)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반부패 청렴정책을 경제부문을 비롯한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정부와 사회 전반의 노력이 강화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자율적 반부패운동과 민관협력을 통한 반부패문화 확산이 특별히 강조될 필요 있음

감 사 합 니 다

